1·3種港 漁港시설 管理

專門人力을 보강 現場관리를 强化

崔 在 陽
〈水產廳施設局 施設課長〉

어항은 어업보급기지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역(陸域)과 어항시설로서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머물면서 조업을 위한 출어 준비, 어획물의 하역, 복지 후생 시설을 갖춘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어업 보급 기지 역할을 하는 항구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항구는 아래와 같다.

- ○ 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어항
- ○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
- ○ 어촌 부락 단위의 소규모 포구

어항의 종류에는

- ○ 제1종 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업의 근거지로서 지정 기준은 그 지방의 어선수가 80척 이상이고 다른 지방의 어선의 이용이 연 100여척 이상으로 그 어획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이다.
- ○ 제2종 어항 : 이용 범위가 지방적인 어업의 근거지로서 지정 기준은 그 지방의 어선수가 20척 이상 80척 미만이고 다른 지방의 어선의 이용이 연 30척 이상 100척 미만으로 그 어획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다.
- ○ 제3종 어항 :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낙도, 벽지에 소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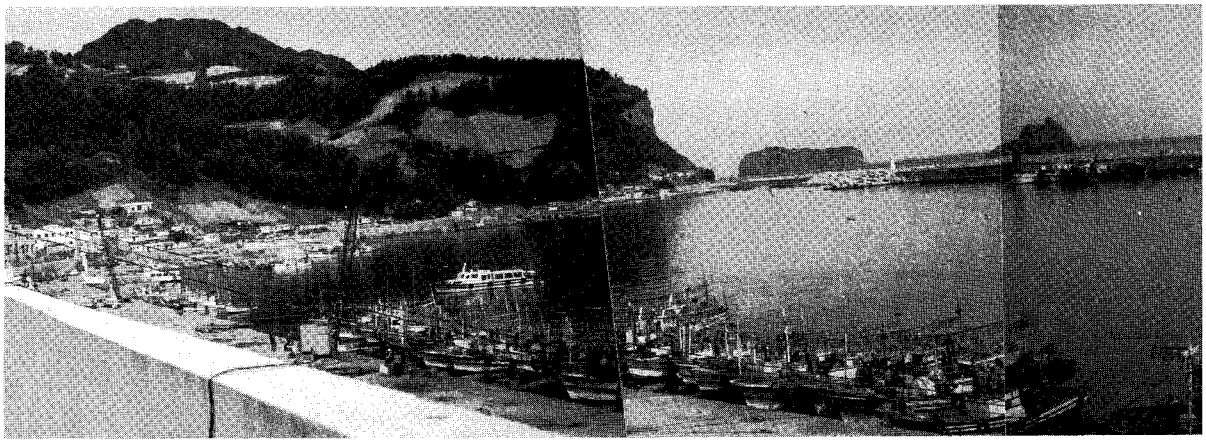

는 어업의 근거지이다.

그리고 어항 시설 종류는

○ 기본 시설
- 외곽 시설 :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흉벽
- 계류 시설 :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항·기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
- 수역 시설 : 항로·박지

○ 기능 시설 :
- 수송 시설 : 철도·도로·교량
- 항행 보조 시설 : 항로 표지·신호 시설·조명 시설
- 어항 시설 용지 : 어항 시설의 부지
- 어선·어구 보전 시설 : 어선 수리장, 어선 기관 수리장, 어구 건조장
- 보급 시설 : 급수·급유 시설
- 수산물 처리 가공 시설 : 하역 기계, 야적장, 제빙, 냉동, 냉장 시설, 가공 공장, 판매장, 수산물 창고
- 어업용 통신 시설 : 육상 무선 전신 전화, 어업 기상 신호 시설
- 선원 후생 시설 : 숙박소, 욕탕, 진료소, 선원 휴게소 등이 있다.

어촌의 산업활동터전

어항은 어촌 지역의 산업 활동 터전이며 수산물의 양륙 및 유통 어업용 가자재 보급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구체적 기능은 아래와 같다.

○ 보호 기능 : 수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태·폭풍 등의 자연 재해로부터 어선과 어민의 생명을 보호

○ 생산과 유통 기능 :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양륙·판매하는 거래 장소로서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공급과 소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형성

어항 시설 중장기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어항수	'90까지	'91	7차 5개년 계획						'97 ~ 2001
				계	'92	'93	'94	'95	'96	
계	399개항	407,429	64,768	568,756	59,734	91,664	110,316	132,968	174,344	2,038,570
1.3종	83	340,230	52,966	463,374	47,932	74,670	89,924	108,228	142,620	1,849,335
2종	316	67,199	11,802	105,382	11,802	16,994	20,392	24,470	31,724	189,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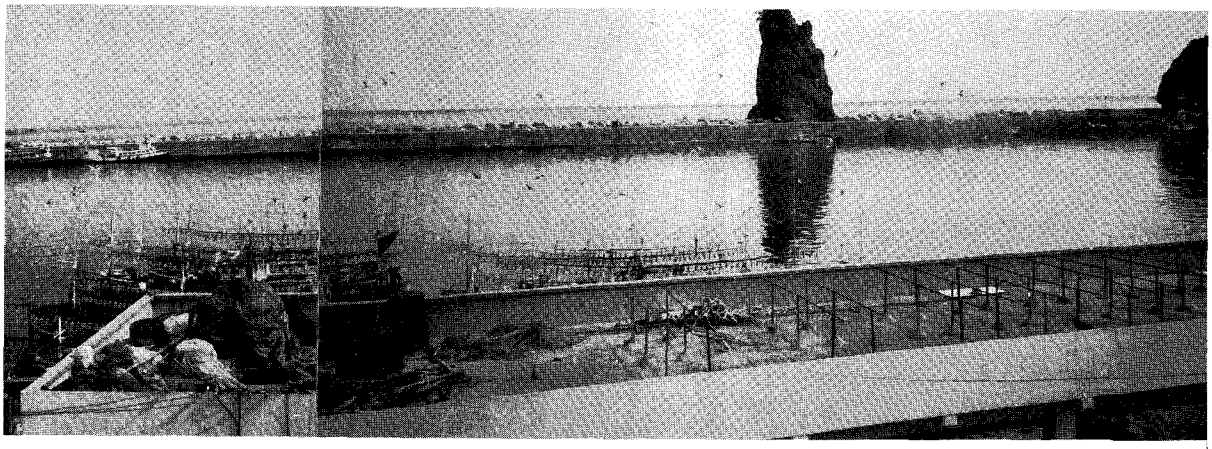

관리 대상 시설 현황

〈91.10.31 현재〉

토 지		건 물		공 작 물	
필지수	면 적	동수	연 면 적	수 량	길 이
224	1,016,223 (307,406평)	30	32,923.95㎡ (9,959평)	237식	40,810m

※ 토지중 구지, 제방은 공작물로써 제외

기능

- ○ 보급 기능 : 어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선의 정박과 어구·유류·얼음 등의 어업 자재 보급과 출어 준비기능
- ○ 교통 기능 : 낙도·벽지 등의 교통 중심지로서 어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관광지 역할

어항 개발 현황과 관리 대상 시설

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는 1·3종 83개 어항과 시·도에서 관리하는 2종 316개 어항이 있다. 그중 1·3종 어항에 대하여 기본 시설을 완공 목표로 집중 투자한 결과 '90년까지 43개 어항을 완공하였고 '91년에는 안흥항 등 6개 어항을 완공하였으며 '91년에는 안흥항등 6개 어항을 완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잔여 어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계획이다.

관리 대상 시설은 기본 시설, 기능 시설이고, 관리 주체는 수산청장, 각 어항사무소장이며, 시·도지사는 어항의 관리 감독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어항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항의 현장 관리자는 당해 어항을 이용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 조합장이다.

어항 시설의 사용 허가

허가 대상 시설은 어항의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중 어항 시설 용지 및 기부 채납 시설이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내용이 어항 시설 용도에 부합될 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고정 시설물을 설치, 사용은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항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어항 시설 사용료가 부과 되는데 국가 기관, 지방 가치 단체, 수산업 협동 조합, 어촌계, 정부 투자 기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사용 허가시에는 국가가 필요

어항 시설 사용 허가 현황

〈'91.10.31 현재〉

용 도	면 적	허 가 건 수
계	46,584평	186건
행 정	11,040평	52건
수 협	33,354평	112건
개 인	2,187평	22건

※ 행 정 : 국가·지방자치 단체용
수 협 : 수협·어촌계용
개 인 : 개인용

할 때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어항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항은 어촌 지역 생활과 소득원의 중심지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나, 어항 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 점검을 해보면, 어항내에 무단 점유물의 방치, 폐선 방치, 주변 환경 정화 미흡, 어항 시설물의 훼손 사항 등이 현저하고 이를 시·도·수산업협동조합에 시정 촉구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이다.

○ 수산청이 중앙에서 현장 관리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 근거인 법령의 미비

○ 현장 관리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및 고유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어항 관리에 관한 관심 부족

○ 어항 이용자인 어민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

수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 '91년 6월 동·서·남해에 어항 사무소를 신설하여 어항 관리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 수산청 감독아래 현장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각 어항 사무소 주관으로

- 매월 2회이상 어항 구역내의 대청소 실시
- 매 분기별 관내 어항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무단 점유물 및 폐선 등 장해물의 제거
- 관내 수산 관계 기관장, 시·도 수산 과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이용자등으로 구성된 어항관리협의회를 열어 어항 관리 상태의 현지 점검을 하여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토의 개선 및 대어민 홍보 활동 강화
- 어항의 운영 관리를 위해 어항 기능 시설의 다양화와 관리 체계의 근거 보완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추진 등 어항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수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어선의 폐선 처리의 강화를 위해 "어업별 어선의 선복량 고시"를 개정('91.11.7.)하여 노후 어선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의 피대체 노후 어선을 추적하여 자체 처분토록 하고, 자체 처분 기피시에는 대체 어선의 등록및 어업 허가 처분을 금지할 방침이다.

2천년대 복지어촌 건설에 대비한 어항 개발계획과 운영 방향

이상과 같이 어항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어촌 지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 어항수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수요 욕구를 충족하는 '이상 어항'을 구현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 지역 어민이 합심하여 어항 시설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겠다.